

■ 치과 칼럼

신경 치료

이번호에서는 신경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oot canal treatment라고 불리는 신경 치료는 보통 심한 충치나 잇몸병 또는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치아의 가장 안쪽 구조로 신경과 혈관 조직인 치수(pulp)까지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하 치료입니다.

신경 치료는 치아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마취 후 염증이 일어난 신경 조직을 제거한 후 그 공간을 깨끗이 소독하여 특수한 재료로 채워 넣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두 번에 걸쳐 치료하고, 만약 치아 손상이 심하면 안쪽에 기둥(post)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치료를 받으면 치통이 사라지고, 염증이 치아 뿌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뼈 조직까지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상된 신경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아와 주위 조직까지 감염이 일어나 치아를 뽑아야만 합니다. 신경 치료 후 크라운을 씌워 치아가 손상되거나 이차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치가 심하게 진행되어 치아 내부의 신경 조직까지 진행된 경우, 충치가 깊어 삭제 시 신경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속적인 치아의 마모나 외상으로의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 잇몸질환으로 인해 신경에 손상이 일어난 경우, 그리고 충치 치료나 크라운을 깎은 후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신경 치료 중엔 치아가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등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등 보철물이 씌워질 때까진 치료가 중단 되면 안 됩니다. 보통 치료가 진행되거나 치료 후 2주에서 약 한 달 간은 음식을 씹을 때 약간의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원하셔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크라운이 약간 높아서 교합 시 지속적인 치아의 트라우마로 인한 경우 간단한 조절로 통증을 없애기도 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신경 치료로 신경이 제거 되었는데 왜 아직 통증이 가시지 않지요?” 인데, 그 원인은 치아 내부의 신경은 제거되었으나, 뿌리 밖에서 잇몸뼈로 치아를 받쳐주어 외부의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치주인대의 염증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외에 신경 치료 시 때꾸는 재료가 뿌리 끝 밖으로 조금 나왔을 경우나, 아주 드문 경우 ‘phantom pain (환상 통증)’ 으로 아무 이유 없이 환자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prevention” 즉 예방입니다. 신경 치료를 기분 좋게 흔쾌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바른 치아 관리 그리고, 매일 거울을 보듯 항상 치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신경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트럼프 시대 이민을 위한 조언

▶ 지난해에서 이어집니다.

3. 영주권의 조건부 해제의 경우

잘 알려진 대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고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해제를 통해서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이 조건부 해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이민국은 더 많은 결혼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심사 기간도 21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 조건부 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Notice to Appear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날짜를 지켜 조건부 해제를 신청하고 2년의 결혼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부공동서류를 모아두기 바랍니다.

4. 서류미비시 추가서류 요청 없이 즉각 거절

과거 이민국은 신청서에서 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 바로 케이스를 거절하는 대신 반드시 추가서류요청서 (Request for evidence)를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최근의 메모를 통해서 추가서류요청서 발부의 의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 서류가 많이 미비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없이 바로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류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중요 서류 없이 일단 케이스를 접수하고 추가 서류가 오면 시간을 번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는 나쁜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민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 케이스의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서류가 준비된 패키지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 Notice to Appear (NTA: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의 즉각적 발부

사실 과거에도 영주권 신청이나 신분 변경이 거절된 경우 현재 체류 신분이 없다면 NTA의 발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NTA가 발부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주 선별적으로 거절의 경우에 NTA가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을 부터 이민국은 취업이민/취업비자 거절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케이스 즉 영주권 신청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을 불문하고 케이스 거절 시 현재 합법 신분이 없다면 NTA를 발부하도록 ICE (국경보호처)에 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NTA가 발부되었다는 것은 추방 절차가 시작되어 신청인의 케이스가 이민법원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재판 절차를 종결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절 후 차후 프로세스를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를 고려해 영주권 /비이민신분 신청의 경우 영주권이나 비이민신분 변경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나가는 말

트럼프 시대에는 이민/비이민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 부터 법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케이스 시작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상의를 하면서 케이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www.myevergreenschool.com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